

인천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18나601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18나6010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6. 14 선고 2015가단1396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H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연, 최민수

변론 종결2022. 11. 24.

판결 선고2023. 1. 19.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6. 14. 선고 2015가단1396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3,843,3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843,32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 1) 원고는 2014. 3. 19.경부터 D 주식회사에 철강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4. 6. 11.경부터 그 물품대금을 연체하였다.
- 2) 원고와 D 주식회사는 2014. 9. 25. 원고가 150,000,000원의 한도에서 2014. 12. 31.까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하였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4. 9. 25.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4. 10. 2.경 153,843,322원에 이르렀고, 이후 20,000,000원이 변제되어 2014. 12. 3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133,843,322원이었다.
- 3) 원고는 D 주식회사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3. 'D 주식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843,32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229). 위 지급명령은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5. 2. 10. 송달되어 2015. 2. 25. 확정되었고, C에

대하여는 2015. 3. 19. 송달되어 2015. 4. 3.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 1)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4. 4.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J, 차남 K, 장녀 L, 삼남 M이 있다.
- 2) L의 남편이자 망인의 사위인 C은 2014.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제1등기'라 한다).
- 3)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를 채무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014. 4. 18.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2014. 5. 19.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제1근저당권',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주식회사 E는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 4) 피고는 C의 사촌동생이다. C과 피고는 2014. 11. 28.경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90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0,000,000원을 승계하고 C에게 차액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제2등기'라 한다).
- 5)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015. 4. 20. 기준으로 원금 600,000,000원, 이자 2,443,265원이고,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014. 12. 22. 기준으로 원금 300,000,000원, 이자 155,539원이다. 피고는 제2등기를 마친 후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907,928,065원을 변제하고 2015. 1. 19. 제2근저당권을, 2015. 4. 22. 제1근저당권을 각 말소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 1) M은 2015. 3. 24. C과 피고를 상대로 제1, 2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438).
- 2)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6. 7. 15. '제1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제2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M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제1, 2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M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C과 피고가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174). 항소심법원은 2017. 2. 17. 아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2017. 3. 2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1. C은 2017. 12. 31.까지 M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C이 M에게 2017. 12. 31.까지 제1항 기재 금원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M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피고가 제2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100,000,000원 중 1/4 상당 금원인 275,000,000원을 반환한다.
- 4) C은 이 사건 조정결정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M은 이 사건 조정결정 제2항에 따라 2018. 2. 22.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17, 22, 23, 24, 28, 36,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100,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액 907,928,065원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금인 133,843,3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3,843,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9,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등기 중 M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4 지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망인 또는 M의 의사에 기하여 위 지분이 C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지분에 관한 C의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위 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가) 망인은 1935. 7. 7.생으로 2014. 3. 20.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2014. 4. 15. 20:02경부터 계속하여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 4. 17. 18:03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이 2014. 4. 16.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관여 없이 작성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제1등기가 마쳐졌는데, 망인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망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K이 2014. 4. 16.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발급받은 것이고, 위 매매계약서에도 K이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K이 상속인 대표로 망인의 뜻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9, 30,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의 액수, C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대금 지급 방법이 이례적이다. 게다가 C은 2014. 4. 16. 망인의 계좌에 9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곧바로 그 중 350,000,000원이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600,000,000원도 그 무렵 C에게 반환되었다. 이처럼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외관만을 만들어내었을 뿐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C은 2014. 7. 8. K, L, M을 상대방으로 하여 '본인은 840,000,000원을 차용하며, 채권자인 K, L, M과 협의하여 2015. 6. 1.까지 상환하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면 매도금액에서 세금 및 비용 공제 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K과 C은 M에게 위 이행각서 작성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라) M이 C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제1심에서 제1등기가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제1, 2등기 전부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C에게 M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되, C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인 피고로 하여금 M에게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시키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조정결정은 제1, 2등기 중 M의 1/4 지분 부분이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하여 새롭게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M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 지분의 가액은 825,000,000원(= 1,100,000,000원 × 3/4)인 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원금만 합계 900,000,000원에 달하여 위 3/4 지분의 가액을 초과하고, 위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위 3/4 지분을 처분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만이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3/4으로 감축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321조), 저당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피담보채권액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잔존 부분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C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 나머지 3/4 지분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고,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3/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100,000,000원임을 다투지 않으면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다60338 판결 등 참조).

4) 한편, J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80932, J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M의 1/4 지분에 관한 C의 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위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원용일

판사박정운

판사권성우

별지